



산업정책 www.kcca.or.kr



- 中企 사업전환 기술개발자금 지원
- 중소기업 시험분석 수수료면제 도입
- 중소기업 정책자금 1조 6,000억 추가지원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내용

중기청, 사업전환기업에 R&D자금 지원 연계

중소 사업전환 기술개발자금 지원

중소기업청은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품목의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품목의 사업에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연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총 25억원, 30개 내외 과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7.6일(월)부터 7.30(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smtech.go.kr)를 통해 신청·접수한다.

사업전환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사업전환 성공률을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과제당 1억원 한도로 총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를 지원할 계획이며, 개발이 완료된 과제는 사업전환지원사업 로드맵에 따라 사업전환 자금 용자를 연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은 신청기간동안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새로이 사업전환계획을 승인 받고자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전환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smtech.go.kr)의 “중기 사업전환기술개발지원공고”를 참조하고, 지원대상 선정발표는 9월 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07~'08년)중소기업청은 74개 사업전환 기술개발과제에 총 60억원을 지원한바 있으면 평균 3대1의 경쟁률을 보임

납품용, 수출용 등 시험분석 수수료 면제

중소기업 시험분석 수수료면제 도입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계획에 따라 경제위기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용, 수출용 등 시험분석 수수료를 2년간(2009.7.1~2011.6.30)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지방중소기업청에 공업제품 등의 시험·분석 의뢰시 납품용, 수출용 등도 시험항목별로 수수료를 납부하여 시험결과에 대한 성적서를 발급 받았음.

○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약 4억원이 경감되어 기술개발 활성화 및 투자확대가 기대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전자과 적합성시험기(4억원), 3차원 측정기(3억5천만원) 등 지방중소기업청 보유 시험연구장비 전체(1천만원 이상 740여종)를 중소기업에 무료로 개방하여 원하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음.

○ 또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 국내외 규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규격에 미달할 경우 원인분석 및 품질수준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 기술개발에 따른 애로도 함께 해결.

□ 향후 2년간 수수료 면제 추진 후에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어 지속적 완화가 필요시 한시적 면제 추진을 확대할 계획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 담당부서
로 문의

| 지방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연락처 | | | |
|------------------|----------|----------------|--------------|
| 지 방 청 | 부서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시험연구지원팀 | 051-601-5141~2 | 051-341-4204 |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시험연구지원팀 | 053-659-2501~2 | 053-592-2604 |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시험연구지원팀 | 062-360-9162~4 | 062-723-2107 |
| | 제주시험연구센터 | 064-723-2101~3 | 064-723-2107 |
| 경지지방중소기업청 | 시험연구지원팀 | 031-201-6860~2 | 031-201-6966 |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시험연구지원팀 | 032-450-1160~1 | 032-818-8363 |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시험연구지원팀 | 042-865-6145~7 | 042-865-6169 |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시험연구지원팀 | 033-260-1640~2 | 033-260-1659 |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시험연구지원팀 | 043-230-5340~1 | 043-235-2491 |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시험연구지원팀 | 063-210-6450~2 | 063-210-6479 |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시험연구지원팀 | 055-268-2560 | 055-268-2552 |

중소기업 정책자금 1조 6,000억 추가지원

□ 내수부진 등 경기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수요가 급증하여 신청접수가 조기 마감되었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재개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 홍석우)은 정책자금의 조기 소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1.6조원을 추가 조성하여 5.1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힘.

○ 금번에 추가 지원 되는 정책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8,000억원, 소상공인지원금 5,000억원, 창업자금 1,5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1,200억원,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300억원 등 1조 6,000억원임

□ 이번 추경에서는 하반기 이후의 자금수요에도 대응하기 위해 월별로 나누어 매월 신청접수를 받도록 하였고

□ 특히 모기업의 경영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한도를 확대하는 등 우대 지원할 계획임

① 모기업의 경영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등 협력업체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시 업체당 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②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시 통합선물 증거금 또는 선물환거래 보증금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 수출금융 지원대상 : (현행) 원부자재자금, 생산

| 중소기업 정책자금 추가지원 현황 | | | | | (단위 : 억원%) |
|-------------------|--------|--------|--------|--------|--------------|
| 구분 | '08예산 | '09예산 | | | 증감율 (B/A) |
| | | 당초(A) | 추가(B) | 계(A+B) | |
| 긴급경영안정 | 4,313 | 7,000 | 8,000 | 15,000 | 114.3 |
| 소상공인 | 2,875 | 5,000 | 5,000 | 10,000 | 100.0 |
| 창업기업육성 | 6,400 | 10,000 | 1,500 | 11,500 | 15.0 |
| 개발기술사업화 | 1,200 | 1,580 | 300 | 1,880 | 19.0 |
| 신성장기반 | 14,556 | 11,900 | 1,200 | 13,100 | 10.1 |
| 계 | | | 16,000 | | |

자금 →(추가) 통합선물 증자금 또는 선물환거래 이
행보증금

③ 긴급경영안정자금 한도는 제조업은 5억원, 비
제조업은 3억원이나 제조업, 비제조업 구분 없이 5
억원 까지 지원

④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엔화 등 외화대
출에 따른 피해기업,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 업체를
추가 포함

⑤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성격상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과 유사한 실내장식업(42412)에 대해 정
책자금 지원

▫ 아울러, 금년도 상환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연장키로 함

▫ 상환연장 규모는 1조 5,000억원 규모로, 대상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중 금
년도 5월부터 12월말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1년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신용등급이 좋은 우량기업, 유동성 여력
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상환연장을 하더라도
회생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은 제외됨

▫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중소
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

를 다운받아 기업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
역본(지)부로 신청하시기 바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내용

1. 개정 이유

▫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납품단가 조정협
의 의무제가 본격 시행

▫ 2009.4.1.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개정
하도급법 공포·시행)

▫ 2009.5.13.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시의 구
체적 과징금 및 벌점 부과기준 마련(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공포·시행)

▫ 신설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법제16조
의2)'의 위반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법 집행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

▫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에 해당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지침에 규정

2. 주요 개정 내용

□ 공평화지침에 “16-2.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의2)” 신설하고, 다음 각 호를 “협의 거부·해태”의 유형으로 예시

가.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나.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 지시·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한다.)에 임하지 않은 경우

다.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Ⅲ. 공평화 지침 1.~16. (생략) (신설)</p> | <p>Ⅲ. 공평화 지침 1.~16. (현행과 같음) 16-2.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의2) 원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p> <p>가.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p> <p>나.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 지시·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한다.)에 임하지 않은 경우</p> <p>다.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p> <p>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 6. 15.부터 시행한다.</p> |